

# 정정 신고 (보고)

2020년 4월 1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투자설명서(메리츠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[주식])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5년 5월 22일

3. 정정사유

- ① 집합투자규약 변경(종류S-P2신설 및 환매수수료 삭제)에 따른 정정
- ②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등

4. 정정사항

항목	정정 전	정정 후
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펀드코드(종류형 포함)	(신설)	종류S-P2 : D3383
요약정보	작성기준일: 2019.12.18 - 투자비용 : 동종유형총보수 2019.11.29 기준 -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 : 2019.12.18 기준 - 운용전문인력 : 2019.12.18 기준 - 환매수수료 종류 A,종류 Ae,종류 C1,종류 C2,종류 C3, 종류 C4,종류 Ce,종류 Ci,종류 CF,종류 CW, 종류 S,종류 S-I,종류 AG,종류 CG 의 경우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90 일 이상 180 일 미만 : 이익금의 50% 180 일 이상 1년 미만 : 이익금의 30%	작성기준일: 2020.03.16 - 투자비용 : 동종유형총보수 2020.01.31 기준 -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 : 2020.03.16 기준 - 운용전문인력 : 2020.03.16 기준 - 환매수수료 : 해당사항 없음
제 1 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(신설)	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S-P2 : D3383 신설
제 2 부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	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(신설)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S-P2 : D3383 신설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(추가) 2020.4.1 - 집합투자규약 변경(종류 S-P2 신설 및 환매수수료 삭제)에 따른 정정

	<p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19.12.18 기준 6~10 (생략) 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 가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 (신설)</p> <p>(3) (생략) 나. 환매 (1)~(4) (생략) <b>(5) 환매수수료</b> 종류 A,종류 Ae,종류 C1,종류 C2,종류 C3, 종류 C4,종류 Ce,종류 Ci,종류 CF,종류 CW,종류 S,종류 S-I,종류 AG,종류 CG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90 일 이상 180 일 미만 : 이익금의 50% 180 일 이상 1 년 미만 : 이익금의 30%</p> <p>(6)~(9) (생략) 다. 전환 ①~④ (생략) <b>⑤ 집합투자규약 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 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 지 아니합니다.</b> <b>1.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 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</b> <b>2.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 우. 다만,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</b></p>	<p>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등</p> <p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20.03.16 기준 6~10 (현행과 동일) 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 가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S-P2 - 가입자격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 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검정금융투자 업자는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 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에 따른 퇴직연금 사업자, 퇴직연금제도가가입자 및 개인형퇴 직연금계좌(IRP)를 개설한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 투자증권 - 선취판매수수료 : 없음 - 후취판매수수료 : 없음</p> <p>(3) (현행과 동일) 나. 환매 (1)~(4) (현행과 동일) <b>(5) 환매수수료</b>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 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니다. (6)~(9) (현행과 동일) 다. 전환 ①~④ (현행과 동일) <b>&lt;삭제&gt;</b></p>
--	---	---

	<p>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</p> 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(신설)</p> <p>환매수수료 종류 A,종류 Ae,종류 C1,종류 C2,종류 C3, 종류 C4,종류 Ce,종류 Ci,종류 CF,종류 CW,종류 S,종류 S-I,종류 AG,종류 CG</p> <p>9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90 일 이상 180 일 미만 : 이익금의 50% 180 일 이상 1 년 미만 : 이익금의 30%</p> <p>주1) (생략) 주2)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. 1. 집합투자규약 제 25 조의 2(수익증권의 전환)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.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. 다만,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비용 : 동종유형총보수 (2019.11.29 기준) (신설)</p> <p>※ 1,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</p>	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S-P2</p> <p>- 가입자격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,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(IRP)를 개설한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</p> <p>- 선취판매수수료 : 없음 - 후취판매/환매/전환수수료 : 없음</p> <p>환매수수료 &lt;삭제&gt;</p> <p>주1) (현행과 동일) &lt;삭제&gt;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비용 : 동종유형총보수 (2020.01.31 기준) - (종류S-P2) 집합투자업자보수 : 0.75%, 판매보수: 0.16%, 신탁업자보수: 0.025%, 일반사무관리 : 0.015%</p> <p>※ 1,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</p>
--	---	---

	<p>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 기간별 예시</p> 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. 이익배분: (생략) 나. 과세 (1)~(4) (생략) 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(추가)</p>	<p>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 기간별 예시</p> <p>: <u>종류S-P2 신설에 따른 변경</u></p> 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. 이익배분: (현행과 동일) 나. 과세 (1)~(4) (현행과 동일) 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S-P2(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)</p>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영 실적 등에 관한 사항	<p>1.~2. (생략)</p> <p>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(세전기준) 가. 연평균 수익률 : 2019.12.18 기준 나. 연도별 수익률 : 2019.12.18 기준 다.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19.11.30 기준</p>	<p>1.~2. (현행과 동일)</p> <p>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(세전기준) 가. 연평균 수익률 : 2020.03.16 기준 나. 연도별 수익률 : 2020.03.16 기준 다.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0.02.29 기준</p>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<p>1. 집합투자업자의 관한 사항 가~나. (생략)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2018.12.31 기준 라. 운용자산규모: 2019.12.18 기준</p>	<p>1. 집합투자업자의 관한 사항 가~나. (현행과 동일)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2019.12.31 기준 라. 운용자산규모: 2020.03.16 기준</p>